

임 대 계 약 서

임대인 “씨-넷 조규장” 을 ‘갑’ 이라 하고 임차인 “_” 을(를) ‘을’ 이라 하여 갑 · 을 당사자
 간에 다음과 같은 임대계약을 체결한다.

구 분	갑	을
사업자(주민등록)번호	221-02-50630	221-80-12935
주 소	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046-5	춘천시 효자3동 40-27
상 호	씨-넷	은혜지역아름센터
전화번호	033-264-3200	033-254-8861
대 표 자	조 규 장 (인)	김 종 호 (인)
계약일자	2011년 8월 29일	

제 1조 임대 계약의 정의

물품임대계약이란 임대인 “갑” 은 임차인 “을” 이 임대한 제품에 대해
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및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하는 것
 이며, “을” 은 이에 대해 소정의 임대료를 갑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.

제 2조 대상물품

1. HP Officejet Pro 8500a복합기
 (잉크 구매조건 임대, 초기 잉크 1set 구매조건)

제 3조 계약기간

1.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.
2. 본 계약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연장을 할수 있다.
3. 본 임대계약 해지시 위약금은 잔여기간 임대료의 20%로 한다. 단, 장비
 분실이나 파손, 타사 비정품잉크로 인한 장비 손상시에는 별도의 위약금이
 청구된다. (파손 및 손상시 최대 위약금 250,000원)

제 4조 임대료

1. 잉크 구매비용은 검정 33,000원 / 컬러 22,000원으로 한다.
2. 월 임대료는 22,000원이며, 최소 3개월에 잉크 1set 이상 구매하는 조
 건으로 한다.
3. 사용잉크카트리지는 100% 반납하여야만 하며 미반납시 잉크가격은 정상
 가로 환원된다. (검정 41,000원 / 컬러 30,000원)

CQ840A



CN12LBK213



4. 렌탈비용 2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렌탈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5. 임대료는 선불이며 초기 잉크 1set 구매하는것으로 한다.

제 5조

임대료의 지불

1. 임대료는 매 1개월마다 청구하기로 한다.

제 6조

유지보수

1. 갑은 을에게 제품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임대기간동안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.

(단, 소프트웨어 지원 및 근무시간 외 지원은 소정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)

2. “을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문제 발생시에는 소정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 7조

소유권 및 선관의무

1. “을”은 물품 및 부가옵션등이 “갑”의 소유임을 표시한 표식등을 훼손함은 물론, 물품의 원형을 변형하는 행위와 “을” 임의의 매각,양도,대여,유용,질권의 설정,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2. “을”은 압류,가압류,공조,공과의 체납,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권리 주체에게 소유권이 “갑”에게 있음을 주장하도록 하며, 이와 동시에 그 사실을 “갑”에게 통보하고 “갑”의 조처에 따라야 한다.

제 8조

계약해지

1. “갑” 또는 “을”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예정일 1개월 전에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2. 약정기간이전에 계약해지시에는 “갑”과 “을”은 서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.

손해배상

“갑”은 본 계약조항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“을”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“을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상물품에 손해(파손 또는 분실)가 발행할 때에는 “갑”에게 제품가액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9조

기타

1. 본 계약에 이이가 있을때에는 “갑” “을” 쌍방의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.

2. 본 계약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“갑”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3. 위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처리한다.

고 유 번 호 증

(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)

고유번호 : 221-80-12935

단 체 명 : 은혜지역아동센터

대표자 성 명 : 김종호

대표자주민등록번호 : 550605-13*****

소 재 지 :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40-27

대표자 주 소 :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819 일성아파트 103-404 11/6

교 부 사 유 :

(유의사항)

- (1)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.
- (2)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2008 년 08 월 08 일

춘천세무서장

